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 월 9 일

여 수 시 장

2023. 5. 9.



여수시 조례 제1880호

붙임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80호

##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여수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제1항 “정의는” “뜻은”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라 함은”은 “란”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자”를 “사람”으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은 “란”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자로 법 제4조 규정”을 “사람으로 법 제4조”로 한다.

제3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 규정”을 “법 제8조”로 하고, “(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규정”을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내에서 다음 금액이하”를 “내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로 하고, “가. 1급,2급 : 1천500만원을 나 3급,4급 : 1천만원 다.5급,6급 : 500만원”을 가. 1급 1천500만원 나. 2급 1천320만원 다. 3급 1천 140만원 라. 4급 900만원 마. 5급 780만원 바. 6급 600만원 사. 7급 300만원 아. 8급 150만원 자. 9급 75만원으로 변경 또는 신설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법 제10조 규정을”을 “법 제10조를”로 한다. 제5조 중 “희생정신과용기가”를 “희생정신과 용기가”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5조 규정”을 “법 제5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사상자의 예우에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을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규칙으로 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수시 조례 제 호

###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여수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

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가. 1급 : 1천 500만원
  - 나. 2급 : 1천 320만원
  - 다. 3급 : 1천 140만원
  - 라. 4급 : 960만원
  - 마. 5급 : 780만원
  - 바. 6급 : 600만원

사. 7급 : 300만원 <신 설>

아. 8급 : 150만원 <신 설>

자. 9급 : 75만원 <신 설>

3. 시가 설치 ·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시가 설치 ·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5. 시가 설치 ·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6. 시가 설치 · 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7.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

8.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9.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 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여수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u>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타인의</u> 위 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u>자와 그 가족및사망한 자</u> 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u>예우이외에</u> 여 수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u>자의</u> <u>숭고</u> <u>한정신과</u>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 회 정의구현에 <u>이바지함을목적</u> 으로 한다.</p> <p>제2조(<u>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사자”<u>라 함은</u> 직무외의 행 위로서 <u>타인의</u> 생명, 신체 또</li> </ol>	<p>제1조(목적) ----- <u>다른 사람</u>----- ----- ----- <u>사람과 그 가족 및</u> <u>사망한 사람의</u>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u>예우 이외에</u> ----- ----- <u>사람의 숭고</u> <u>한정신과</u> ----- ----- ----- <u>이바지함을 목적</u> -----.</p> <p>제2조(<u>정의</u>) ----- ----- <u>뜻은</u>----- --. 1. ----- <u>란</u>----- ----- <u>다른 사람</u>---</p>

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은 자로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

2. -----란-----  
----- 다른 사람-----

----- 사람으로 법 제4조 -----

제3조(적용범위) -----  
----- 법 제3조  
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  
-----.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  
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  
15조 규정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  
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  
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  
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규정  
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  
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  
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나. 3급, 4급 : 1천만원

제4조(지원사업 등) <삭 제>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1. ----- 법 제8조에  
따른 -----  
-----  
-----  
-----.

2. ----- 법 제8조-----  
-----  
-----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내  
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  
-----.

가. 1급 : 1천 500만원

나. 2급 : 1천 320만원

다. 5급, 6급 : 500만원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의 예우에 관한 법

다. 3급 : 1천140만원

라. 4급 : 960만원

마. 5급 : 780만원

바. 6급 : 600만원

사. 7급 : 300만원

아. 8급 : 150만원

자. 9급 : 75만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 제10조를 -----.

제5조 -----

희생정신과 용기가 -----

제6조(지원신청) -----

법 제5

조-----

제7조(준용 등) 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률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  
-----정한다.